

입 주 계 약 서

성균관대학교 캠퍼스타운사업단(이하 "A"라 한다)과 아리스타(이하 "B"라 한다)은 성균관대학교 캠퍼스타운 창업지원공간 이용 및 지원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.

- 아 래 -

제1조(기본원칙)

"A"는 "B"가 성공적으로 창업활동을 수행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, "B"는 "A"가 제공하는 입주공간 및 지원프로그램과 관련하여 "A"가 정한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 활동함으로써 "A"의 창업지원사업과 "B"의 창업활동의 발전에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.

제2조(계약공간)

"A"는 "B"에게 아래의 창업지원공간을 제공하고 "B"는 이를 사용한다.
서울시 종로구 혜화로 6길 68-2, B1(공용면적 124.62㎡)

제3조(계약기간)

계약기간은 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.

제4조(임대료)

"A"는 "B"에게 위의 계약기간 동안 입주공간의 임대료, 보증금, 관리비를 전액 무료로 지원한다.

제5조(입주기한)

"B"는 입주 계약서 작성 후 10일 이내에 각 센터에 방문하여 입주등록을 완료하여야 하며, 10일 이내에 뚜렷한 사유 없이 미등록 시 입주계약은 취소된다.

제6조(의무)

- ① "B"는 입주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의 용도로 입주공간을 사용해야 하며 이외의 용도로 사용 시 입주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한다.
- ② "B"는 입주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류상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 "A"에게 이를 즉시 알려야 한다.
- ③ "B"는 성균관대학교 캠퍼스타운사업단 입주기업으로서 캠퍼스타운사무국에서 운영하는 창업지원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.
- ④ "B"는 성균관대학교 캠퍼스타운사업단 입주기업으로서 아래의 사항에 대해 "A"가 요청할 시 성실히 보고하여야 한다.
 - (㉠) 월별 창업활동 보고서
 - (㉡) 입주기업 매출 및 투자 현황
 - (㉢) 입주기업 일자리 창출 및 고용인력 현황
 - (㉣) 입주기업 지원사업 참여현황
 - (㉤) 기타 서울시 및 성균관대학교에서 요청하는 입주기업 정보 일체

제7조(입주공간의 이용 및 관리)

- ① "B"는 입주한 센터의 규정을 따라야하며, 센터의 규정을 미 준수할 경우 "A"는 "B"에게 서면 경고 3회 이후 중도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.
- ② "B"는 "A"에게 보고한 팀원 이외의 타인에게 입주 공간 이용을 허용할 수 없다.
- ③ "B"는 입주공간을 타인에게 전대 또는 양도하거나 일체의 처분을 절대 할 수 없다.
- ④ "B"는 "A"와의 상의 없이 임의로 입주 공간에 시설물을 새로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.
- ⑤ "B"는 무단으로 입주 공간의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"B"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 및 장비를 오손, 파손 또는 멸실했을 때, 즉시 "B"의 비용으로 이를 원상 복구 하여야 한다.
- ⑥ "A"와 각 센터의 관리직원은 관리상 필요할 경우 "B"의 입주공간에 출입할 수 있다.

제8조(입주자 금지사항)

"B"와 "B"와 관련된 참여인력은 각 센터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.

- ① "A"에게 임대받은 입주계약서 상의 공간 및 시설물에 대한 저당권 설정 행위
- ② 시설물의 무단 반출 및 무단 사양변경에 대한 행위
- ③ 공중에 대하여 불쾌감을 주거나 센터 관리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물품을 설치 및 방치하는 행위
- ④ 위험성이 있거나 인체에 유해한 물품을 반입 또는 보관하는 행위
- ⑤ 법에 저촉되는 물건의 반입 및 제조, 판매하는 행위
- ⑥ 임의로 냉/난방용 기재를 반입하거나 사용하는 행위
- ⑦ 동물을 사육하는 행위
- ⑧ 기타 "A"가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통보하는 제반 행위

제9조(중도 계약해지)

- ① "B"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"A"는 계약 만료일 이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 - (ㄱ) 입주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입주승인을 받은 경우
 - (ㄴ) 입주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
 - (ㄷ) 소음 등 공해의 과다발생 및 업무방해 등으로 타 입주팀의 사업활동에 피해를 끼치는 경우
 - (ㄹ) "B"가 "A"와의 계약 및 준수사항을 불이행하였거나 각 센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
 - (ㅁ) 기타 "A"가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통보하는 제반 행위
- ② 전항 ①항 각 호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 "A"는 "B"에게 해지사유와 해지예정일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해지예정일 30일 전까지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.
- ③ "B"는 그 희망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여 입주공간에서 퇴소할 수 있다. 다만 그 사유를 명시하여 "A"에게 통보해야 하며, "A"가 정한 절차에 따라 퇴소할 수 있다.

제10조(계약만료 퇴소)

- ① "B"는 계약만료일인 2023년 11월 30일까지 퇴소를 완료하여야 한다.
- ② 계약만료일까지 "B"가 퇴소를 완료하지 않는 경우 계약만료일 익일부터 "A"는 해당 입주공간을 폐쇄한다.

빙서류를 퇴소 후 10일 이내 "A"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1조(분쟁 및 관할)

- ① 본 계약에 관하여 "A"와 "B"간에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일반관례 및 본 대학의 결정에 따른다.
- ② 본 계약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 대한 재판은 "A"의 관할법원으로 한다.

제12조(관리규정 및 준칙)

- ① 본 계약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규, 각 센터의 운영규정, 본 대학의 관리규정에 따른다.
- ② "A"는 각 센터 내 각종 시설물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관리규정을 제정, 시행, 폐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규정도 본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.

제13조(기타)

"A"와 "B"는 본 계약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 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3년 4월 1 일